

화학과 대학원 규정 (2011년 7월 7일)

본 규정은 2011. 9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석사학위에 관한 규정

1.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한 석사논문 심사위원회(3인)는 논문지도 교수의 추천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3학기 때 구성한다.
2.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은 3학기 말까지 석사논문 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S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에 대한 규정

1.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하여 박사학위 6학기 때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은 6학기 말까지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종논문심사 6개월 이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규정]

- 가. 예비심사 시기 :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는 7월,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는 1월에 한다.
- 나. 예비심사위원의 구성 : 최종논문심사 심사위원(5명 : 위원장1명, 위원4명)으로 한다.
- 다. 예비심사 청구자의 준비사항
- a. 구두발표 준비(학위과정에서 달성한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20분 분량으로 준비)
 - b. 연구요약문(2페이지 분량)
 - c. 예비심사에 관련된 모든 논문(발표된 논문뿐만 아니라 투고직전의 논문까지)

d.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일(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제출)

e. 심사위원장이 발표 논문 및 목록을 확인한 후 심사일 결정

4. 박사학위 최종심사위원회는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예비심사위원중 적어도 3명은 최종심사위원회에 포함된다. 최종심사위원회에는 2명의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1명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
5.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SCI 등재학술지에 제 1저자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SCI 등재학술지 제 1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IF지수 합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제2저자라도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표

전기발표자(2월 졸업예정자)		후기발표자(8월 졸업예정자)	
7월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1월	예비심사 요구서 제출 및 심사
10월	심사요구서 제출	4월	심사요구서 제출
11월	학위청구 논문심사	5월	학위청구 논문심사
12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6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1월	합격자 발표	7월	합격자 발표
2월	전기 학위수여	8월	후기 학위수여

* 이 추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05년 3월 17일 및 2007년 1월 24일의 규정에 준한다.